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6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연희·정성호·김성화

임오경 · 이병진 · 황 희

김윤덕 • 서미화 • 박홍배

홍기원 • 민형배 • 박 정

정준호 • 박상혁 • 허종식

한민수 • 문진석 • 김준혁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.

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).

## 법률 제 호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검검 등) 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
  - •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"라 한다)는
  -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  -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 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(改修)·보수(補修)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및 개수·보수에 드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·시기, 안전점검기관,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3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3조의2(청소년복지시설의 안
	전검검 등) ① 청소년복지시설
	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이
	조에서 "청소년복지시설 운영
	자"라 한다)는 시설에 대하여
	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
	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제
	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
	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
	결과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
	<u>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</u>
	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	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
	은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
	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	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시설
	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
	<u> 개수(改修)・보수(補修)를 요구</u>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복지
	시설 운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	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

제4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<u>안</u>	전점?	<u>검 및</u>	제3항	에 따른	· 시설
의	보왼	- 및	개수 •	보수에	드는
비.	용의	전부	또는	일부를	보조
할	수 🤉	있다.			

⑤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·시기, 안전점 검기관,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(과태료) ① -----

\_\_\_\_\_

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33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 반한 경우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